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밀산업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6545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밀산업의 범위, 실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및 사업비의 우선 지원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70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말뚝박기 공사비: 건축물의 기초공사인 말뚝박기 공사에 드는 비용

제8조제1항제5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름이 400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콘크리트파일을 사용하는 기초공사의 비용을 일률적으로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름 및 길이에 상관없이 공공택지의 공급 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 반영하도록 하여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703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의4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1. 제20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적재(積載)·저장·운송 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항공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관한 자료
- 2.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에 관련된 자료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74조제1항 중 “별표 3 제5호에 따른”을 “별표 20의2 제5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을 “별표 20의2”로, “바목의”를 “바목의 의무보고 대상”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종류

- 가. 비행기 분야. 다만, 비행기에 대한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로 제한한다.
- 나. 헬리콥터 분야. 다만, 헬리콥터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헬리콥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3,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로 제한한다.

2. 경량항공기의 종류

- 가. 경량비행기 분야: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또는 동력패러슈트
- 나. 경량헬리콥터 분야: 경량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의 정비분야는 전자·전기·계기 관련 분야로 한다.

제9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81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비행기 분야로 한정을 받은 사람은 제81조제5항제2호가목의 경량비행기 분야로 한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제81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헬리콥터 분야로 한정을 받은 사람은 제81조제5항제2호나목의 경량헬리콥터 분야로 한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